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7 - 693호

의 안 명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

대 상 기 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시·도, 시·군·구, 금융감독원

의결연월일 2017. 6. 26.

## 주 문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6월 26일

위원장 성 영 훈

---

위 원 김 인 수

---

위 원 박 경 호

---

위 원 이 상 민

---

위 원 신 근 호

---

위 원 박 계 옥

---

위 원 김 현 철

---

위 원 김 종 보

---

위 원 허 용 석

---

위 원 전 준 경

---

위 원 이 호 용

---

위 원 이 재 경

---

[별지]

---

**교통사고에 따른 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

---

2017. 6.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b>I. 추진배경</b> .....	<b>1</b>
<b>II. 현 황</b> .....	<b>2</b>
<b>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b> .....	<b>4</b>
① 교통사고 조사결과 통보체계(경찰청) .....	4
② 교통사고 보험 접수 및 처리 과정(보험사) .....	5
③ 원인자부담 관련 업무협조체계(유관기관) .....	7
④ 원인자부담 업무처리지침(도로관리청) .....	9
<b>IV. 조치사항</b> .....	<b>11</b>
참고 : 연도별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확인 현황('12~'16년) .....	12

# I. 추진배경

-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 문재인정부 공약 : (3-10-1-4-2)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및 홍보 등 예산확대 추진

## □ 추진개요

-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도로법 제91조)
  - ※ 도로관리청 : 한국도로공사(고속국도), 지방국토관리청(국도), 광역기초지자체(지방도) 등
- 그러나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사고원인자 파악이 어려워 도로관리청은 매년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충당

구 분 ('16년 기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원인자 미파악 비율	4% (5,536건 중 241건)	49% (1,648건 중 804건)	43% (1,858건 중 805건)
예산 부담 비율	16% (216억원 중 34억원)	32% (22억원 중 7억원)	37% (41억원 중 15억원)

※ 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중 14곳, 지방도는 17개 시도 중 9곳 기준

⇒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파악과 복구비용 부담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추진경과

- 도로관리청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실태조사('17. 3 ~ 5.)
  - ※ 국토부 국토관리사무소, 부산시청, 대전시청 및 구청, 경찰청 및 경찰서, 금감원,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금융소비자연맹,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17. 5. 15.)
  - ※ 국토부, 경찰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삼성화재, 현대해상, 택시공제조합 관계자 참여(11개 기관 16명)
- 관계기관 협의('17. 5.)
- 분과위 및 전원위 상정('17. 6.)

## II. 현 황

### □ 원인자부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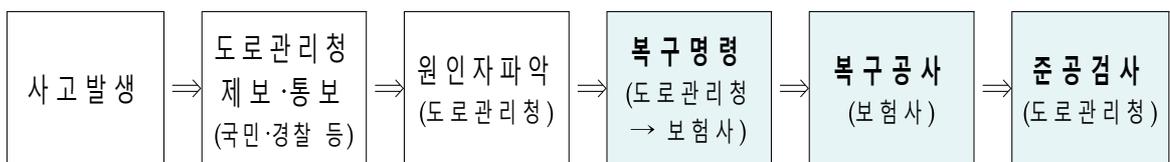
- 신설·확장·복구 외 다른 이유로 도로 공사가 필요할 경우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규정(도로법 제91조)
  -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사고 원인자에게 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 관련 부담금 부과

#### 【 관련규정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

-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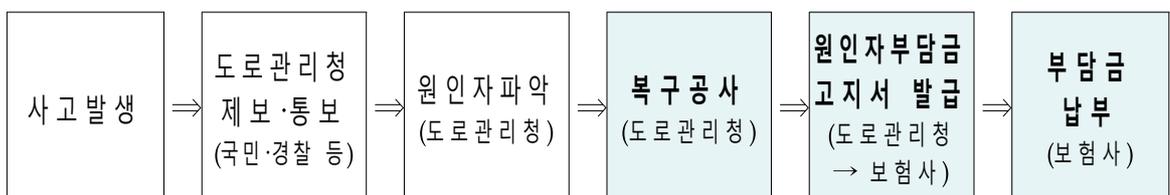
### □ 원인자 확인시 복구절차

- (원인자 직접복구) 도로관리청이 원인자에게 복구를 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



※ 원인자 확인 시 원인자 직접 복구 비율은 국도·지방도 기준 80% 수준

- (원인자부담금 부과)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우선 복구 후 원인자에게 부담금 납부 고지서 발급



## □ 원인자 확인 현황

### ○ 도로유형별 원인자 확인 현황

- 고속국도의 경우 도로시설물 파손사고 5,536건 중 5,295건 (95.6%), 금액기준으로 약 216억원 중 182억원(84.2%) 확인
- 국도는 1,648건 중 844건(51.2%), 금액기준 22억원 중 14억원(66.7%) 확인
- 지방도는 1,858건 중 1,053건(56.7%), 금액기준 41억원 중 26억원 (63.0%) 확인

【 '16년 도로 유형별 사고 원인자 확인 현황 】

구 분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	국도 (14개 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 (9개 시·도)
파손 사고 (건)	원인자 확인 (비율)	5,536	1,648	1,858
		5,295 (95.6%)	844 (51.2%)	1,053 (56.7%)
복구 금액 (백만원)	원인자 부담 (비율)	21,581	2,160	4,108
		18,175 (84.2%)	1,441 (66.7%)	2,589 (63.0%)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세부내용 별첨)

※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중 4곳, 17개 시·도 중 8곳은 통계 미관리로 제외되었으며, 지방도 중 시·군·구 도로는 미포함

### ○ 원인자 확인 방법

- 국도·지방도의 경우 직접 확인이 각각 51.4%, 66.4%로 가장 높음

【 '16년 도로 유형별 사고 원인자 확인 방법 】

(단위 : 건)

구 분	계	직접 확인	경찰통보	보험사 통보	기 타
국 도	844	434 (51.4%)	285 (33.8%)	69 (8.2%)	56 (6.6%)
지 방 도	1,053	699 (66.4%)	209 (19.8%)	84 (8.0%)	61 (5.8%)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 고속도로의 경우 관련 통계가 없으나 대부분 직접 확인(한국도로공사 실무자 답변)

###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교통사고 조사결과 통보체계(경찰청)

##### 문 제 점

○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도로관리청 통보 근거 부재

- 경찰청은 사고결과에 대한 도로관리청 통보 의무 규정이 없어 사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제공
  -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사고사실과 원인자를 파악할 수 없어 시설 복구가 지연되거나 예산으로 복구하는 사례 발생
- ※ 고속국도는 경찰·자체 순찰대 등을 통해 도로파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나, 국도·지방도는 자체 순찰대로만 사고내용 확인에 한계

##### 개선방안

○ 도로 시설물의 파손 원인자 및 사고내용 정기 통보 근거 마련

- 경찰청은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및 사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도로관리청에 통보토록 '교통사고 조사규칙' 개정

< 관련예시 >

- ▷ 정기 통보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Traffic Cop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등을 활용(주간단위 등)
- ▷ 규칙 개정 :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3조 신설

현 행	개 정(안)
< 신 설 >	제 43조(사고정보 제공 등)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로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사고원인자 등 필요한 정보를 관할 도로관리청에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다만, 파손된 시설로 교통장애가 발생하거나 안전이 우려될 경우 도로관리청에 즉시 복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2 교통사고 보험 접수 및 처리 과정(보험사)

### 문 제 점

#### ○ 물피사고 시 원인자의 신고 의무 규정 미준수

- 전체 교통사고 중 80%는 경찰청 신고 없이 당사자간 합의 또는 보험 처리

####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	897,271	1,133,145	1,119,280	1,129,374	1,141,925
경찰청 접수 건수	221,711 (24.7%)	223,656 (19.7%)	215,354 (19.2%)	223,552 (19.8%)	232,035 (20.3%)

(출처 : 도로교통공단(경찰청, 보험회사, 택시·버스, 화물 등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자료 수집))

- 도로시설물 파손 등 물피사고 시 피해자(도로관리청)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17. 6. 3. 시행)  
※ '14. 12월, 국민권익위 '자동차 물피사고후 도주방지 및 제재 기준 마련' 권고
- 시행 초기인 만큼 사고 원인자가 관련 규정을 모르고 도로 시설 파손 사실 은폐 및 미신고

####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

제 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 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제 54조제 2항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도로 시설물 파손 후 미신고 사례 】**

- ▷ '12년 서울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손 1,904건 발생, 이중 331건(17.4%)만 원인자 부담('13. 7월 언론보도)
- ▷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사고발생을 상황실 CCTV로 확인후 출동해도 대부분 현장을 바로 이탈하여 추적 불가(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개선방안**

○ 보험사가 사고 접수·처리 시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경찰 신고 의무를 안내토록 보험사 업무 매뉴얼 보완

※ 보험사 고객센터 사고접수 안내팀 및 대물보상팀 업무 매뉴얼(온라인 신고 포함) 보완

- ▷ 안내 예시 :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도로관리청에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만원 부과

※ 도로관리청은 원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도로 종류·위치 별로 관할 도로 관리청 연락처를 관할 경찰 및 각 보험사에 제공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신고 의무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 예 시 : 운전면허 시험문제 출제,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보험 가입 시 관련 정보 제공 등

**【 중장기 검토사항 】** : 보험사가 직접 관계기관에 정보 제공토록 의무 부여

- ▷ 보험사가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접수 또는 인지할 경우 반드시 경찰·도로 관리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 및 위반 시 제재 방안 도입

※ 제도도입 관련 연구 및 '도로법' 등 개정 검토

### 3 원인자부담 관련업무 협조체계(유관기관)

#### 문 제 점

#### ○ 도로관리청의 사고 원인자 파악을 위한 정보 조회 법적 근거 부재

- 도로관리청은 CCTV 등을 통해 사고차량 번호를 파악할 수 있으나, 법령상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원인자 파악 한계

##### 【 차량정보 조회 요청사례 】

- ▷ ○○시는 차량번호를 인지, 경찰과 보험개발원에 보험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임을 사유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일부 도로관리청은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성과가 거의 없는 편임.

##### 【 원인자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

- ▷ 서울시,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신고실적은 서울시는 '14년과 '16년 각 1건, 대구시는 '12년 2건, '13년과 '16년 각 1건뿐(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지역 유관기관 탐문 사례 】

- ▷ ○○ 국토관리사무소의 경우 '16년 원인자가 확인된 시설물 파손사고는 201건이며, 이중 8건만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았고, 100건은 파출소 탐문을 통해, 나머지 93건은 인근 견인업체나 정비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타기관 협조 요청 사례 】

- ▷ ○○시는 도로파손 사고발생시 경찰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유선통보만 받을 뿐이며, 시민제보로 경찰에 사고사실을 조회해도 회신이 없는 등 비협조적임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개선방안

### ○ 도로관리청의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근거 마련

- 원인자부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도로법 개정(예시 : 제91조 제5항, 제6항 신설)

현 행	개 정(안)
제 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 ④	제 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④(생략)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유사사례 :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 자동차 검사 및 관리업무 시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 ○ 관계기관 간 MOU 등 업무협조체계 구축

- 도로관리청, 경찰, 보험사 및 복구업체 간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시 피해상황 신속 전파 및 원인자 정보 등 수시 공유

※ 참여기관 예시

- 도로관리청 : 원인자부담 업무 수행, 관계기관 대상 사고 정보 조회 요청
- 경 찰 청 : 도로시설물 파손 관련 사고 정보 정기 제공
- 보험업계·복구업체 : 도로시설물 파손 관련 사고 정보 제공, 신속한 복구 지원
- 운송업계(견인, 택시 등) : 도로관리청에 사고 관련 정보 제공

【 사 례 : 부산국토관리청, 경남경찰청, 5대 보험사(삼성, 동부, 현대해상, 메리츠, KB)간 MOU 체결(16. 4. 18.) 】

- MOU 내용 : 각 기관은 교통사고 인지시 도로 시설물 파손 유무 등을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 시설물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협력
- 운영결과 : 복구기간이 '13~'15년간 2주일에서 '16년 1주일로 단축

## 4 원인자부담 업무처리지침(도로관리청)

### 문 제 점

#### ○ 도로시설 파손 복구 관련 업무처리지침 부재로 부실공사 우려

- ※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중 4곳, 17개 시·도청 중 8곳 파손시설 통계 미관리
- 한국도로공사는 자체 '교통안전관리기준'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마련, 이에 따라 원인자부담 관련 업무 처리
- 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손괴관리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작성 기준 부재로 일부 기관은 미신고 파손 시설 미관리

#### 【 국토관리사무소 도로손괴관리카드 및 관리대장 】

도로손괴 관리카드				관리번호 2017-16	
도로손괴 현황		손괴복구 현황			
손괴일시	2017-05-04	손괴위치	광릉시계	현황	부수·과징금 (세외)
손괴시설	노면열차 유도차선	위 치	안산시 용평역 상하차	손괴일시(일시)	손괴( ) 신고( ) 통보( ) 통보( ) 기입( )
손괴사유	노면열차 유도차선	손괴규모	노면열차 유도차선	손괴일시(일시)	2017-05-04
손괴자	노면열차	손괴번호	13의 7142	복구방법	복구비총액 1,700,000
손괴사유	노면열차	손괴번호	13의 7142	복구비총액	1,700,000
손괴사유	노면열차	손괴번호	13의 7142	복구비총액	1,700,000
손괴사유	노면열차	손괴번호	13의 7142	복구비총액	1,700,000

도로손괴(침수,치리)대장(2017)														
구분	순차	비고												
												상태	비고	
1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2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3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4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6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7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8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9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0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1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2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3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17.01.15

- 지자체는 통일된 업무처리지침이 없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원인자부담 업무를 문서 기록 없이 처리

#### 【 지자체 원인자부담 관리 사례 】

- ▷ ○○광역시 ○○구는 경찰에서 유선으로 손괴사실을 통보받고, 보험사가 시설물 복구 시 현장확인만 하고 별도 문서관리 없이 업무 종결처리
- ▷ ○○광역시 ○구는 사고접수 시 수기로 대장에 기록하고, 보험사 시설물 복구 보고 시 현장확인 후 출장보고서에 내용과 결과만 간략히 보고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복구공사 관련 지침 부재로 공사 지도·감독, 준공검사도 하지 않아 저가·불량 제품을 사용한 부실공사 사례 발생

**【 부실 복구공사 사례 】**

- ▷ 보험사와 복구업체가 사고 시 파손된 가로등을 복구하지 않고 주변 가로등을 떼어 교체한 사실 적발(광주 전남지역 경찰 조사결과)('13. 11월, 언론보도)
- ▷ '13년말 국도내 사고로 SB4 등급의 방호울타리가 훼손되었으나, 보험사와 복구업체가 도로관리청의 확인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저가의 안전도가 낮은 SB2 등급 제품으로 교체(도로교통공단 사고현장검사 담당 제보)

**개선방안**

○ 도로시설물 복구·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 관리카드, 처리대장 작성, 문서기록 등 행정관리방안 마련
- 원인자 직접 복구 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부터 착공, 준공 및 하자관리 등 표준 업무처리절차 마련
- ※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로시설물 파손 정보를 통보 받은 도로관리청은 복구 계획 또는 복구결과 등을 회신
- ※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대상 업무처리지침 마련·시달, 지자체 조례 개정

## IV.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일자 : 2017. 6.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경찰청, 시·도, 시·군·구, 금융감독원
- 권고내용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 통보체계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시설물의 파손 원인자 및 사고내용 정기 통보 근거 마련(경찰청)</li> <li>※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 훈령) 개정</li> </ul>	'18. 6
교통사고 보험 접수 및 처리 과정 (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가 사고 접수·처리 시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경찰 신고 의무를 안내토록 보험사 업무 매뉴얼 보완(국토교통부, 지자체, 금융감독원)</li> </ul>	'1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신고 의무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li> <li>※ (중장기 검토사항) 보험사에게 관계기관 정보제공 의무 부여</li> </ul>	'17. 12
원인자부담 관련업무 협조체계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관리청의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근거 마련(국토교통부)</li> <li>※ 도로법 제91조 개정</li> </ul>	'1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간 MOU 등 업무협조 체계 구축(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지자체)</li> </ul>	'17. 12
원인자부담 업무처리지침 (도로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시설물 복구·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마련(국토교통부, 지자체)</li> </ul>	'17. 12

## 연도별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확인 현황('12~'16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속 국도 (한국 도로 공사)	소계	건수	6,665	5,897	5,631	5,526	5,536
		금액	16,633	15,636	15,576	17,885	21,581
	확인	건수	6,291 (94.4%)	5,687 (96.4%)	5,439 (96.6%)	5,246 (94.9%)	5,295 (95.6%)
		금액	15,430 (92.8%)	14,907 (95.3%)	14,805 (95.1%)	16,649 (93.1%)	18,175 (84.2%)
	미확인	건수	374 (5.6%)	210 (3.6%)	192 (3.4%)	280 (5.1%)	241 (4.4%)
		금액	1,203 (7.2%)	729 (4.7%)	771 (4.9%)	1,236 (6.9%)	3,406 (15.8%)
국도 (14개 국토 관리 사무소)	소계	건수	1,046	1,309	1,149	1,279	1,648
		금액	1,639	2,098	1,955	1,662	2,160
	확인	건수	725 (69.3%)	720 (55.0%)	625 (54.4%)	610 (47.7%)	844 (51.2%)
		금액	1,348 (82.2%)	1,518 (72.4%)	1,334 (68.2%)	997 (60.0%)	1,441 (63.7%)
	미확인	건수	321 (30.7%)	589 (45.0%)	524 (45.6%)	669 (52.3%)	804 (48.8%)
		금액	291 (17.8%)	580 (27.6%)	621 (31.8%)	665 (40.0%)	719 (33.3%)
지방도 (9개 시·도)	소계	건수	2,184	1,774	1,755	1,955	1,858
		금액	3,193	3,283	3,719	3,978	4,108
	확인	건수	1,033 (47.3%)	951 (53.6%)	918 (52.3%)	1,152 (58.9%)	1,053 (56.7%)
		금액	1,944 (60.9%)	2,108 (64.2%)	2,401 (64.6%)	2,997 (75.3%)	2,589 (63.0%)
	미확인	건수	1,151 (52.7%)	823 (46.4%)	837 (47.7%)	803 (41.1%)	805 (43.3%)
		금액	1,249 (39.1%)	1,175 (35.8%)	1,318 (35.4%)	981 (24.7%)	1,519 (37.0%)

※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중 4곳, 17개 시·도청 중 8곳 통계 미관리

※ 지방도 중 시·군·구 도로 미취합